

협약서

인천항만공사(이하 “협업기관”)와 KOTRA인천지원본부(이하 “지원본부”)는 『2026 코스모프로프 연계 K-뷰티 아세안 진출 지원 사업』 (이하 “지원사업”)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「2026 코스모프로프 연계 K-뷰티 아세안 진출 지원 사업」 관련 “협업기관”과 “지원본부”가 “지원사업”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약기간)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, 협약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.

제3조 (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)

- ① “협업기관”이 “지원사업”의 진행을 위해 “지원본부”에게 지급하는 사업비는 금 65,000,000원 (금 육천오백만 원, 영세율 적용)으로 하며, “협업기관”이 대·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(이하 “재단”)에 출연한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“지원본부”에게 위 사업비를 지급한다.
- ② 제1항의 사업비는 “지원사업”의 종료 후 “지원본부”가 “협업기관”에 사업결과 및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“협업기관”이 제3항의 검토과정을 거쳐 지급한다.
- ③ “지원본부”는 본 사업의 예산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해야 하며, “협업기관”은 “지원본부”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결과 및 사업비 지출내역이 사업의 예산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“재단”을 통해 제1항의 사업비를 지급한다.

제4조 (사업의 내용) “지원본부”는 참가업체 선정, 배정 등 ‘2026 코스모프로프 연계 K-뷰티 아세안 진출 지원 사업’ 참여 관련 사업지원을 수행하고, 사업 결과보고서를 “협업기관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 (통보) “지원본부”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협약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“협업기관”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 (협약의 변경) “협업기관”과 “지원본부”는 상호 모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 (협약의 해지) “협업기관”과 “지원본부”는 상호 사업수행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 (관계법령 및 규정의 준수)

- ① “지원본부”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, 「대외무역법」 및 관련법령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9조 (이행 등) “협업기관”과 “지원본부”는 본 협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, 다만,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기관의 제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, 협력 이행에 적극 노력한다.

제10조 (비밀유지) “협업기관”과 “지원본부”는 협력과정을 통해 인지한 상대기관의 업무내용이나 이와 관련되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을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유출하거나 언론공개 및 학술지 게재, 학술회의 등에 발표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 (협약의 효력발생) 본 협약서는 “협업기관”과 “지원본부”가 본 협약서로 협약을 맺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직인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4월 24일

인천항만공사

경영부문 부사장 김 순 철



KOTRA인천지원본부

본부장 김 삼 수

